다목적 금속 가공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

2016. 12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작성자 : 한성대학교 최기흥 교수

ㅇ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

○ 제·개정 경과

- 2009년 6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
- 2012년 4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- 2016년 12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ㅇ 관련규격 및 자료

- HSE EIS-13: Safeguarding of combination metalworking machines

○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(프레스 등의 위험방지)

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 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6년 12월 27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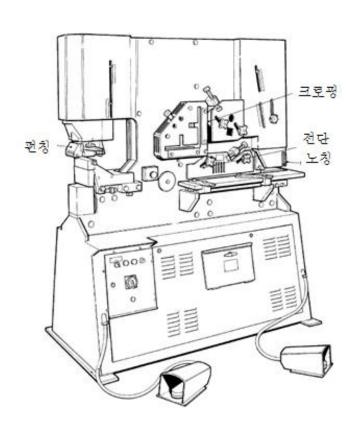
다목적 금속 가공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다목적 금속가공기의 예상치 못하거나 통제되지 않은 움직임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<그림 1>의 다목적 금속가공기의 예상치 못하거나 통제되지 않은 움직임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 적용한다.



<그림 1> 다목적 금속 가공기

3. 정 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위험요인(Hazard)"이라 함은 신체의 손상이나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.
 - (나) "위험성(Risk)"이라 함은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의 손상이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과 정도의 조합을 말한다.
 - (다) "가드(Guard)"라 함은 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으로 서 구조에 따라 케이싱, 덮개, 스크린, 문, 울타리(방호울)등으로 지칭되는 것을 말한다.
 - (라) "고정식 가드(Fixed guard)"라 함은 가드가 특정위치에 용접 등으로 영구적으로 고정되거나 고정장치(스크류, 너트 등)로 부착된 구조로서,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가드의 제거 또는 개방이 불가능한 구조의 가드를 말한다.
 - (마) "조정식 가드(Adjustable guard)"라 함은 전체 또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고정식 또는 가동식 가드로서, 작동할 때마다 용도에 맞도록 가드를 조정하여 조정된 상태에서 고정하여 사용하는 구조의 가드를 말한다. 다만, 작동 중에는 조정되지 않는다.
 - (바) "비상 정지(Emergency stop)"라 함은 사람에 대한 위험, 공정상 기계 또는 작업에 대한 위해를 감소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「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위험요인

- (1) 다목적(범용) 금속 가공기 또는 강재 가공기(Steel workers)등의 기기들에서 편 청(Punching), 노칭(Notching), 크로핑(Cropping), 전단(Shearing), 및 굽힘 (Bending) 등 다용도 작업과정의 위험요인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2) 공작물의 예상치 않은 또는 통제되지 않은 움직임으로부터 끼임 또는 협착위험과 공구이탈에 의한 위험이 있다
- (3) 작업대에서 작업하는 중에 작업자의 협착에 의한 손에 심각한 부상이 발생되며 사고의 상당수는 절단까지도 초래한다. 많은 수의 부상이 작은 공작물작업과 관련되어 있다.
- (4) 사용자는 기기의 제약 사항을 인식하여야 한다.
- (5) 공작물 크기 및 형상에 대한 제한과 관련한 제조업체의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 특히 특수강 또는 고강도강 제품을 가공할 경우에도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른다.

5. 방호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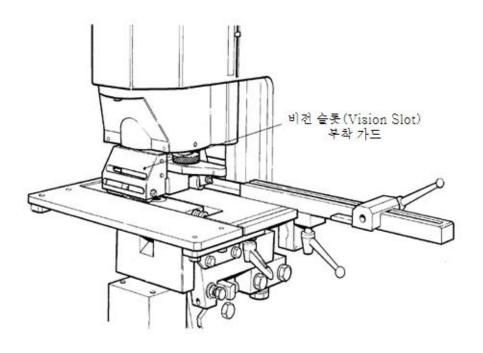
5.1 일반사항

- (1) 기기의 가드는 각 작업대에 독립적으로 적용하며, 다른 작업대의 작업자 및 기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성되고 설치되어야 한다. 가드는 모든 방향에 대해 닫히는 공구(Closing tool) 구조와 펀치 또는 날 사이의 끼임점 (Trapping point)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- (2) 대부분의 경우, 고정식, 조정식 또는 자체 폐쇄형 가드를 사용하여 작업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. 또한 잠재적인 끼임점(예를 들면, 펀치)의 벌어진 틈을 4 mm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. 가능한 폐쇄형 공구(Enclosed tooling)를 사용한다.

- (3) 기기에 설치된 모든 가드는 예상되는 작업 조건의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 하게 설치되어야 한다. 공작물에 대한 시야 확보가 필요한 경우, 가드에 적절한 슬롯을 포함시키거나, 아니면 투명하거나 메쉬(Mesh)형 재료를 사용한다.
- (4) 공작물은 적절하게 지지되어야 한다. 특히 작은 공작물을 편칭, 노칭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,공작물 가이드 바 및 스토퍼가 포함된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.

5.2 펀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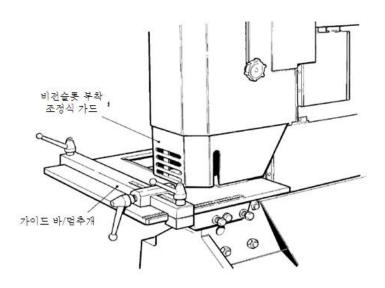
- (1) 펀칭 작업대의 끼임점에 손 및 손가락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고정식 또는 조정식 가드를 갖추어야 한다.
- (2) <그림 2>와 같이. 스트리퍼 플레이트 어셈블리(Stripper plate assembly)는 일부 방호할 수 있으나 나머지 접근 가능한 끼임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. 가드 의 설치는 주로 공작물의 크기 및 형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.
- (3) 끼임점은 벌어진 틈(틈새)의 크기를 4 mm이하로 유지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으며 행정(Stroke) 길이를 제한하여 끼임 점을 줄일 수 있다.



<그림 2> 펀치 스테이션 (작업대에 부착)

5.2 노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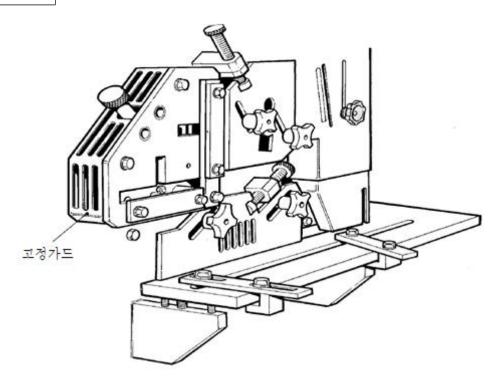
편칭 작업대의 경우와 비슷한 원칙이 적용된다. <그림 3>과 같이 고정식, 또는 조정식 가드가 대부분의 경우에 적합하다 예를 들면, 채널 선택과 같이 공작물의 정상적인 가드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가드의 배치를 조정해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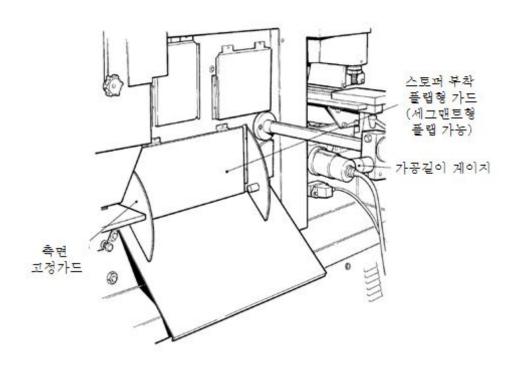
<그림 3> 노칭 스테이션 (작업대에 부착)

5.3 전단 및 크로핑

- (1) 기기의 투입 면은 <그림 4>와 같이 적절한 가드, 공작물 가이드 또는 위치유지 (Hold-down)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 이들 장치는 공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며 가공 시 공작물의 과도한 움직임을 방지한다.
- (2) 공작물 가이드 또는 위치유지 장치 및 기기몸체 사이로 블레이드에 손가락이 닿을 수 있다면 고정식 가드를 사용하여 틈을 메운다.
- (3) 취출(Take-off) 측 공구도 <그림 5>와 같이 방호되어야 한다.
- (4) 고정식, 또는 조정식, 자체 폐쇄식 가드는 공구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.
- (5) 가드 개방은 공작물의 출입만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어야 한다.
- (6) 일반적으로 작은 공작물은 손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.
- (7) 적절히 만들어진 경사진 취출대(Take-off table) 또는 슈트를 사용하여 팬 또는 박스로 수거되도록 한다.
- (8) 보다 큰 공작물은 작업대 또는 롤러 트랙에서 회수될 수 있다.
- (9) 다른 작업자가 위험한 부품에 접근할 필요성을 최소화하도록 이들 장치 또는 이 와 비슷한 처리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- (10) 가공길이 게이지(Cut-to-length gauging) 장치도 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런 장비는 공작물 또는 공구를 직접 보는 필요성을 최소화함으로 써 가드를 방해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된다.



<그림 4> 전단 및 크로핑 스테이션



<그림 5> 크로핑 및 전단 후면 가드

5.4 굽힘

- (1) 프레스의 브레이크에 사용되는 것과 원칙적으로 비슷한 공구가 (편칭작업대에서 행해지는) 굽힘 작업에 사용될 수 있다. 작업자가 허락받지 않고 조정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구 간 벌어진 간격은 4 mm 이하여야 한다.
- (2) 간격 조정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 벌어진 간격이 4 mm를 초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호조치를 취하며 제조업체로부터 추가적인 협조를 구한다. 굽힘 작업은 굽힘을 목적으로 설계된 기기에서만 행한다.

5.5 기기제어

누름판을 포함한 풋 스위치는 사고를 방지하도록 덮개로 덮혀 있어야 한다.

5.6 비상 정지

- (1) 기기의 제어반 및 원격작업대에 비상정지버튼을 설치해야 한다. 비상정지버튼은 기기가 수동으로 재설정될 때까지는 재가동하지 못하도록 잠금(Lock in)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.
- (2) 비상 정지가 해제 또는 재설정되더라도 기기가 비상정지조작 이전의 작동이 자동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. 정상적인 기동제어를 작동할 때만 기기가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.

6. 교육 및 훈련

이들 기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모든 작업자들은 포괄적인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기기 제어, 안전 또는 방호장치, 위험 및 방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해 야 한다.